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의 견 서

(구미경 의원)

2024. 12.

정원도시국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51호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구역에서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과태료 부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위임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유해야생동물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라는 내용을  
조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